

신 상 변 동 신 고 서					처리기간
					1 일
보훈번호	국가유공자등과의관계	성 명	주 소		
			(전화 :)		
변 동 내 역	사망, 국적상실, 유족 또는 가족 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 하게 된 때	국가유 공자등 과 의 관 계	성 명	사 유	사유의 발생 · 소 멸 일
	1년이상 계속하 여 행방불명이 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	성 명	행방불명일자	소재 확인일자	비 고
	성명 및 생년월 일등 신상변동 이 있는 때	개 명		기 타 변 동	
구 성 명		신 성 명	변 동 전	변 동 후	변동사유
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 고 인 (서명 또는 인)

지 방 보 훈 청 장
보 훈 지 청 장 귀하

※ 구 비 서 류	수 수 료
	없 음

1. 사망한 때 :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
2. 국적을 상실한 때 : 호적등본 또는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
3.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: 호적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
4.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: 호적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
5. 법 제78조제2항(법 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 : 판결문등본 1통
6. 법 제7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(법 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1에 해당되는 자가 된 때 : 판결문등본 1통
7.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: 주민등록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
8. 성명·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: 호적등본·주민등록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
9. 다음 순위자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 : 사진(3센티미터×4센티미터) 1매
10.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군기록등에 변경이 있는 때 :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

	자 력 정 리	카 드	전 산
		인	인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